일본공산당의 독도문제에 관한 견해

콤소몰새내기

자기전에 번역을 막 마쳤읍니다... 국내에 전문 번역을 못 찾아서, 직접 번역했는디 번역 첨이라 오역, 의역 많을 수도 있음. 원본이 pdf파일인데 화질도 구려서 번역하기 뭐같드라 번역기 돌리지도 못하고 암튼 즐겁게 보시길

시작하기 전에-

모든 [竹島]-즉 죽도/다케시마-표기는 일본측 표기에 맞추고, 표기 내의 [독도]와 구분짓기 위해, [독도]로 치환하지 않고 원문을 유지했음.

원문의 괄호는 '--'표로, 괄호「」『』는 []로 수정하였음. 역자주는 ()로 달아 놓았음.

다케시마(1) 문제에 관하여

타치키(2) 외교정책위원장의 견해

잡지 [世界週報(세계주보)]-時事通信社(시사통신사)- 편집부의 요구에 응해,(1977년) 2월28일, 일본공산당중앙위원회의 타치키 히로시 외교정책위원장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2백 해리 시대를 맞아(3), 일본의 영해 이십해리화를 맞아, 일본의 어업 상에서도 다케시마의 귀속이 다시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케시마의 귀속을 돌아가는 분쟁은 1952년, [한국](4)이 이승만라인에 의해 같은 섬을 일방적으로 둘러싸, 점령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5년의 [일한조약](5)체결에 즈음하여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다케시마를 조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이래, 반세기에 걸쳐 일본령으로 있어 왔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도, 다케시마를, 조선에 대해 방기하는 섬의 중에 넣고 있지 않다.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영유권의 주장에는,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한편, 다케시마의 귀속을 싸고 도는 역사적 상황에 근거해 보면, 19세기말까지는 무가치한 무인의 암초로 있었던 이 섬의 귀속은, 반드시 문헌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05년의 일본의 영유수속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한국]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메이지정부가 조선식민지화를 진행할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이 주장에 대한 검토할 문제가 있다.

게다가 조선이 남북으로 나눠졌기에, 일본정부가 [한국]과 유착해 미일[한]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다케시마 문제를 더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잡한 경과와 배경을 가진 다케시마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호의 주권존중, 평화우호의 정신과 원칙을 우선시하여 해결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 일본공산당은, 영토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국]과의 사이가 아닌, 통일된 자주, 독립의 조선과의 대화의 사이에 의해 조정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다케시마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위해, [한국]은 다케시마의 일방적 점거를 중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재 일본과 [한국]사이에 공(公)해의 어장으로 하여 조업을 행하고 있는 같은 섬 주변의 해역은, 계속하여 문서대로 서로 진입해 조업이 계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적기]1977년3월1일)

각추

- 1. 일본공산당 측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立木 洋(たちき ひろし、1931년3월11일 2017년6월20日\일). 일본의 정치가. 전 참의원 의원 (일본 공산당 공인 5 기).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쳐 동당 명예 임원을 역임했다.
- 3.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하는 듯하다.
- 4. 모든 '한국'-즉 대한민국에, 강조표시가 되어 있다.
- 5.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설

다케시마 문제의 배경

공산당의 타치키 외교정책위원장은, [세계주보] 편집부의 요청에 응해 1977년 2월 28일,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일본공산당의 견해를 확실하게 하였다. 이 기회에 다케시마 문제의 배경을 찾아봅시다.

옛날부터 알려졌던 섬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 섬의 서북 약 159킬로미터, 조선의 울릉도의 동남 약 92킬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의 지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동도, 서도라 이름 붙여진 2개의 섬과 주변에 있는 수십의 암초로 구성되며, 그 표면적은 0.239평방킬로미터, 즉 도쿄의 히비야(日比谷)공원보다 살짝 넓은 정도입니다.

같은 섬은, 남서에 약간 잡초가 나 있는 정도이지만, 수목은 한 그루도 없는 바위로,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계속하여 둘레 전체가 절벽이고, 바다가 있어도 배가 피난할 수 있는 곳도 없는 탓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다케시마는 일본해(동해) 항해자의 좋은 목표로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일본인에게도 알려져, [송도]의 이름 으로 문헌에도 나타났던 섬입니다.

다케시마 -당시의 [송도]-에 관해 최초에 기술하고 있는 일본의 문헌은, 1667년-간분7년-에 이즈모 번사의 斎藤豊仙(재등풍선/사이토 토요히토)이란 사람이, 오키 섬을 순시할 때의 견문을 책으로 쓴 [隱州視聴合記(은주시청합기)]-권1-이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17세기 후반의 몇몇 문헌에 현재의 다케시마-당시 [송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당시부터 일본인이 다케시마에 대해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같은 섬에 소라나 전복을 가지러 갔다는 것이 문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측은, 1454년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라는 15세기 이래의 고문헌에 있는 [천산도]나 [삼봉도]가, 지금의 다케시마-조

선명 [독도]-라고 말합니다.

1905년의 일본령 편입

그러나, 타치키 씨의 견해에도 드러나 있는 대로, [19세기말까지 무가치한 무인의 암초로 있던 이 섬의 귀속은, 반드시 문헌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다케시마를 [조선부속]으로 하고 있는 일본측의 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의 내정을 알아보고 오라는 사명을 띤 [외무성 출임]으로 하여금 조선에 보내졌던 우전백모 로부터 1870년-메이지 3년-4월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로 말하자면, 조선에 들어있는 스파이 보고서에는, [죽도송도조선부속이상성후시말(주:죽도, 송도는 조선의 부속이 되겠음을 확인함. 상성후-는 일어 고문서 표현의 하나로, ~가 되겠습니다 정도에 해당.)]이라는 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송도]는 현재의 다케시마, [죽도]는 현재의 울릉도입니다. 이 문헌은 [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1905년-메이지38년-1월28일의 각료 회의로 같은 섬을 다케시마(죽도)라 하는 도명으로, 일본령으로써 시마네현 소속에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1905년의 다케시마 편입은,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에 종사하던 오키 섬의 나카이 요우자부로(中井養三郎)가 같은 섬의 [영토편입병에대하원(領土編入並に貸下願)]을 제출한 것을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동년 1월28일의 각료 회의 결정은, 중정의 제출을 [심사함에 메이지36년 이래 나카이 요우자부로란 자가 마땅히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관계서류에 의해 명확히 되기 위해선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본국소속의 시마네현 소속 오키 섬 관리의 소관으로 하여 지장 없도록 사고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카이 요우자부로가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국제법상의 [선점]으로 확인해, 다케시마의 일본령 편입이, 국제법상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료 회의 결정에 붙여 내무대신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 지사는,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지 제42호]를 가지고 이 일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케시마는 이 이래, 일본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일[한]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까지, 어디서부터도 이(異)론이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평화]조약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그런데, 전후 1946년 1월, 연합국 총사령관은 울릉도, 제주도, 이즈 제도, 아마미(제도), 오키나와등과 같이, 다케시마를 일본의 행정영역 외로 하는 것을 지령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맥아더 사령부 자신도 [작은 섬 소속의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지시로 해석해선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 케시마의 일본 영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고 규정하고, 다케시마에 대해선, 조선령도 일본령에서 제외하는 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정지의 점령군 지령도 당연 그 효력을 잃고, 경과와는 차이가 있어도 이즈제도, 아마미, 오키나와 등이 일본령으로 돌아온 것과 같이, 일본의 행정 영역에 돌아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3개월전의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다케시마를 이 라인 안에 넣고, 다케시마-조선명은[독도]-를 [한국]령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이것에 항의하여, 일본령을 주장하였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독도는 역사상 완전한 한국 영토이며, 일본은 이것을 탈취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리 하여 다케시마의 영유를 놓고 돌아가는 일[한]분쟁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다케시마-독도-를 조선령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측의 지도 등에는 1958년까지 다 케시마-독도-를 조선 영외로 해 둔 것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일한조약]체결의 때, 다케시마의 영유를 포함해 일괄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한조약]과 동시에 주고받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선,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수속을 좇아, 중재에 의해 해결함을 그리는 것으

로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양경비대를 상주하여, [한국]국기를 세우 고 군사점령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공정한 해결을

그러면, 타치키 담화로 [검사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한국]의 주장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정부의 1905년 일본령 편입은, 일본이 [일한의정서]-1905년 2월-, [일한협약]-1905년 8월-을 강제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실질상 장악하였기에, 조선은 시마네현 고지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조차 없는 조건의 아래서 일어났던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일본측에선 [일한조약]은 [단순히 [일본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외부에 고용할 것]을 규정한 것에 그친 현실이고 일본정부가 추천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에 간섭한 사실은 없다][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한 이론이 있습니다-田村淸三郎[다케시마 문제의 연구]-. 외무성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견해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사실에 반하는 이론이고, 1905년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사실상 빼앗은 상태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어서 1905년-메이지 37년-5월31일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대(對)한시설강령]에서, 만일 외교를 한국 당로자(当路者-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일임한다면, 위험한 사태가 될지도 모르기에, [외교 안건의 처리에 관해선 미리 제국(주:일본)정부의 동의를 요하는 뜻을 약속하는 기간을 둘]것을, 이 기획 수행 전에도, 외교고문관을 넣어 외정의 감찰을 수행할 것, 그리고 외교고문은 오히려 외국인을 가지고 여기에 임명해, 제국공사의 아래에 그 직무를 채택하거든 [내외에 대해 원활히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기 쉽도록]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방침에 따라 체결된 [일한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교고문-미국인-을 두고, 사실상, 조선의 외교 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당시 조선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에 대항하는 이의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사실이라 말합시다.

명백한 역사상의 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내정간섭과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는 다케시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타치키 담화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일본공산당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라 조선령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한국]에 의한 일방적인 다케시마 점령을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치키 담화가 말하듯이, [복잡한 경과와 배경을 가진 다케시마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호의 주권존중, 평화우호의 정신과 원리를 우선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주장에는, 문답무용의 태도를 가져선 안됩니다. -[적기]1977년 3월 2일-

- 배움의 미학